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에 대해 재안내드리오니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1부. 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수신자 대한간호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치과 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병원간호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팀원	이한슬기 팀장	서희정 본부장	전결 10/01 구홍모
협조자			
시행	환자안전본부-2170	(2019.10.01.)	접수 ()
우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 http://www.koiha.or.kr/
전화	02-2076-0668	전송 2222	/ hsglee@koiha.or.kr / 공개